

부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458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오정국, 이중재, 이아람

원고승계참가인 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장범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15.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가단30407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승 계 참 가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4) 한편 원고는 2021. 5.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아 2021. 6. 2. C에게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양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 제3쪽 제16행과 제18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병 제1, 2호증’을 추가○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채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9행을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
- 제3쪽 제21행, 제5쪽 제16, 18행, 제9쪽 제11행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
- 제9쪽 제10행을 ‘4. 결론’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원고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현영, 판사 조운정, 판사 이재희

별지1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호 59.8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49634.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963,440분의 4,145

